접 수	의안과 - (20 . . . :)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20 년 03 월 07 일

청 원 인

성 명 : 김예진

주 소 :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김예진 (인) 외 2 인

의 장
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

청원소개의견서

청 원 인	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	
	성명 : 김예진	
건 명	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	
소개년월일	2020년 03월 07 일	

소개의견

청원인 김예진은 제12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.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<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>입니다.

초중등교육법 17조는 학생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교행사나 일정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.
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 자치권에 대해 자세한 법 조항이 없어 학생 자치권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보장이 되지 않기에 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게다가 최근에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학생 자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. 학교에서 학생 자치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면 학생들이 학교 행사나 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, 또한 진정한 민주 시민이 되어 사회에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
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

제17조(학생자치활동)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·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②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며, 시도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.

소 개 의 원 김예진 인

청원서

1. 제안 이유

학생자치의 정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며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자율성, 공공성, 연대성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행위입니다.

하지만 학생자치가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. 실제로 교육청의 조사를 통하면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실제로 반영한다는 2019년 10월 학생 1000명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확인하면 선생님들은 70 % 이상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46% 정도가 반영한다고 느꼈습니다.

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. 또 학생의 자치 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법률상의 자세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.

따라서 본 위원회는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.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생자치 활성화 조항 늘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, 나아가 초·중등학생이 자치의 중요성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2. 주요 골자

제17조(학생자치활동) ①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・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② 학생의 자치 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며, 시도 교육청은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.

<신구문 대조표>

현행	개정
제17조(학생자치활동)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・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학생자치활동) ①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・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	②학생의 자치 활동 보장을 위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지며, 시·도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.

청원인 성명 : 김예진

청원인 주소 :

청원인 전화번호 :